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6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김윤덕ㆍ이해식ㆍ윤준병

신영대 • 이연희 • 한병도

위성곤 • 박상혁 • 임오경

조인철 · 위성락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

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

법률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제5조제1항에도"를 "제5조제1항 본문에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를 "제17조,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와 전승교육사"로, "보유자는"을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3호
·제4호의2·제5호 또는 제19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미달한 사실이 있는"을 "미달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를 "일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
| 회) ①・② (생 략) | 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 ③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 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 | |
| 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
| 호선한다. | <u>.</u>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 3 |
| 법률, 종교, 미술, <u>공예의</u> 업 | <u>공예 등의</u> |
|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 |
|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 |
| 람 |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
| 예외) <u>제5조제1항에도</u> 불구하 |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
| 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 | |
| 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 | |
|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 |
|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 | |
|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 |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 |

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 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 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 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 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 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건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

| , |
|-------------------|
| |
| |
| |
| |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
| 시험 등) ① |
| |
| |
| |
| |
| |
| 제17조, 제19조 및 제32조 |
| 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 |
| 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 |
| 육사보유자 및 전승교육 |
| <u>사는</u> |
| |
| <u>.</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 |
| 록취소 등) ① |
| |

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u>미달한 사실이 있는</u> 경우. 다만, <u>자본금이 일시적으로</u>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예외로 한다.

<신 설>

5. ~ 18. (생 략) <u><신 설></u>

| <u>제3호·제4호의2</u> |
|---------------------|
| ·제5호 또는 제19호에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
| |
| <u>미달하게 된</u> |
| <u>일시적으로</u> |
| |
| |
| |
|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 |
|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
| 요건에 미달하여 3회 이상 영 |
| 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5. ~ 18. (현행과 같음) |
|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 |
| 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
|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 |

| | 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
|-------------|-----------------|
| |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
| | <u>을 말소한 경우</u>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